

외상대금 지급기준

1. 대금 지급일: 월 4회

국가계약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준수를 위해 병원과 계약상대자 간 정기청구 일을 다음과 같이 정함.(약품 및 진료재료, 의료장비 제외)

구분	청구일 =세금계산서 작성일 (청구서가 없는 경우)	기준일수	정기 지급일
원칙	각 정기지급일 기준 D-5영업일	청구일로부터 5일	5일
			12일
			19일
			25일
합의서 작성 시	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지급됨.		

※ 단, 예외적으로 병원과 계약상대자 간 사전협의를 의하여 청구일 외의 날짜에 청구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에 의거 기간 산정 시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함.

※ 정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을 지급일로 함

2. 외상대금 지급기준

구분	계약금액	기준일	관련 근거
약품	500만원 이하	30일 이후 60일 이내 25일 정기지급일	약사법 제47조
	500만원 초과	6개월 도래 직전 25일 정기지급일	
진료재료, 의료장비	1,000만원 이하	30일 이후 60일 이내 25일 정기지급일	국립대학교병원 계약대가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1,000만원 초과	3개월 도래 직전 25일 정기지급일	
그 외	무관	5영업일	국가계약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10영업일 (합의서 작성)	

※ 기준일수 적용은 청구를 받은 날(청구서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적용됨.

3. 시행일: 2022년 7월 1일(시행일 이후 청구분부터 적용함)